2022년
환경기술인 교육계획

1. 운영 개요
2. 교육 계획
3. 행정 절차
4. 세부 교육과정
5. 강사 구성
6. 2022년 추진계획

Contents

차 례

1. 운영 개요 2

2. 교육 계획 3

3. 행정 절차 5

4. 세부 교육과정 12

5. 강사 구성 16

6. 2022년 추진계획 22

붙임

■ 교육기관 주소 및 연락처 36

■ 관련법규 38

■ 질의회신사례 64

■ 환경기술인교육 관계법규 요약 86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1 운영 개요

■ 배경

-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수질, 소음·진동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실시
- 대기·수질, 소음·진동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안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함

■ 목적

- 환경기술인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의 이해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 근거

- 교육 및 교육기관

분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교육기관	시행규칙 제125조	시행규칙 제93조	시행규칙 제64조

- 교육비용 :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 위탁업무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기술인에게 신규(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
- 매 분기의 교육실적은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 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또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2 교육 계획

■ 교육과정 구성

○ 교육 이수 시기 및 시간

구분		이수 시기	교육 시간	교육형태
대기	신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4일 이내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질	최초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4일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소음·진동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교육	5일 이내	

○ 과정 편성

구분	교육과정		교육 시간	교육일
대기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전문 과정	28시간	4일
	일반관리자	일반 과정	14시간	2일
		면제(사업장) 과정	6시간	1일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전문 과정	28시간	4일
	일반관리자	일반 과정	14시간	2일
		운수·세차(사업장) 과정	6시간	1일
		위탁·면제(사업장) 과정	4시간	1일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6시간	1일

■ 교육 방법

○ 신규(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소양 및 사명감 고취, 현장 실무 적용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

○ 법령 기준 준수 등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내 영상자료, 사례 발표, 실무실습, 질의·응답 등의 방법 활용

○ 교육의 접근성을 고려한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개설·운영

■ 강사선정 및 교재편찬

○ 강사선정

- 각 교육기관의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
- 환경분야 기술사, 현장 경력자, 운영 시스템 관리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강의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를 조사·평가하는 강사 평가제도 적용

○ 교재편찬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이론으로 내용 구성
-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을 적극 활용
-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가 내용이 있으면 보조자료 제작

■ 교육의 효과측정 및 근태평가

○ 효과측정

- 교육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이해도 및 개선사항을 발견·보완 하고자 교육 참석자에게 설문 조사하여 효과측정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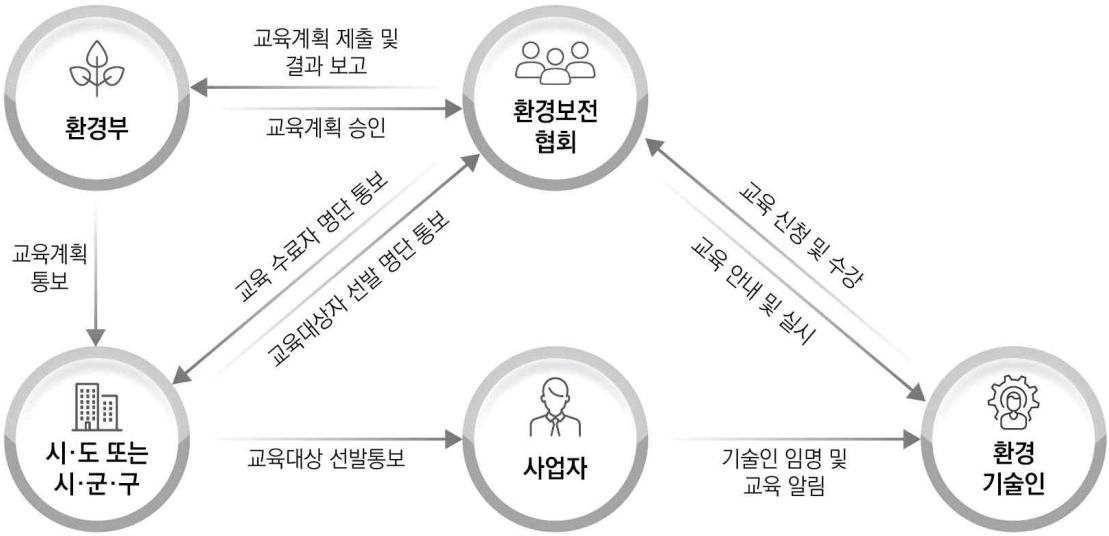
○ 근태평가

- 교육 효과 제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근태평가를 시행
-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교육시간의 1/10시간을 초과하여 결강한 자는 불참으로 간주하여 미수료 처리
- 그 외 관리사항은 협회「환경법정교육 운영규정」준용

3 행정절차

■ 행정체계

○ 기관별 행정체계



○ 교육 진행 절차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대상 선발 통보	교육일정 편성 및 안내 / [사업자] 기술인 임명 및 교육 알림	교육신청 및 등록(참석)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및 과정 평가 (설문조사)	교육결과 보고

■ 교육계획 수립

○ 행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교육대상자를 교육기관에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 (대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수질) 시·도지사, (소음·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기관은 수요 파악된 교육대상자를 근거로 권역별 교육계획 수립 후 각 행정기관에 「환경기술인 교육계획」제공

■ 교육대상자 선발 및 안내

○ 행정기관은 「교육계획」에 의거 해당연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안내하며, 교육기관은 교육 접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 전체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병행 운영

○ 교육일 및 장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경우, 교육기관의 장 승인사항으로 하며 승인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변경사항 안내(원격화상교육 시에도 동일)

■ 교육 신청

○ 교육대상자는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 등록 또는 사이버교육

1 회원가입

①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로 접속
② 회원가입 → 약관동의
③ 본인인증 : 복수 인증수단(휴대폰, I-PIN 등) 중 선택하여 진행
④ 회원정보 입력 → 등록(가입) 완료
※ 회원가입 하는 본인 정보만 입력(사업장 정보는 교육 신청 시 입력)

2 교육신청

① 로그인 → 교육 신청 →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②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③ 선택한 과정에 신청 정보입력
④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선택 가능)

3 교육신청 확인 및 취소신청

①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 상세보기
② 상세보기 화면 내 '취소신청' 가능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 교육비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수료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과정	4일(28시간)	90,000원
	일반관리자 과정	2일(14시간)	45,000원
		1일(4~6시간)	22,500원

■ 집합교육 등록

○ 교육신청자는 교육 개시 당일 09:30~09:50(일반), 13:30~13:50(전문) 내에 지정된 교육 장소로 출석하여 등록

○ 교육 등록 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수강 불가(교육 대리참석 불가)

■ 교육 실시 및 효과측정

○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일정에 맞춰 교육 실시

○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사항을 차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 사이버교육 수강

○ 교육신청자는 **'접수기간'**과 **'수강기간'**을 준수하여 이용

- 로그인 후 '내 강의실' 내 진행 중인 과정의 '강의실 입장' 클릭
- 해당 과정의 '사이버교육' 수강하기

○ 수강기간 내에 전 차시 일괄 또는 분할 수강이 가능하며, 차시별 수강 시 해당 차시(1차시 30분~60분)를 1회에 수강 완료 필요

- 접속 유지 시간이 경과하여 연결이 끊긴 경우 진도율 반영 불가
- 수강기간 내에 신청자가 **'교육연기'** 또는 **'취소신청'** 가능

- 수강기간 종료 후 '수료 처리일'로부터 **'복습기간(1개월)'** 제공
  - 교육 이수 후 교육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복습기간 제공
  - 복습기간은 교육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수료 처리와 무관

■ 근태관리

-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교육시간의 1/10시간을 초과하여 결강한 교육 참석자는 불참으로 간주하여 미수료 처리

■ 준수사항

-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참석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교 조치 및 불참 처리
  - 대리 교육참석으로 적발되는 경우
  - 무단으로 결강, 조퇴, 외출, 지각하는 경우
  - 음주 및 소란, 질서 문란 등 교육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교육시간 중 휴대폰(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신문, 잡지를 보는 등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교육장 시설·장비 등을 파손·분실한 경우 그에 대한 변상 처리
- 소지품은 본인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분실 시 본인 과실로 처리)

■ 수료증 발급

-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환경보전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
- 교육 실시 지역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일련번호로 발급
  - 수료증 발급번호(년도, 지역번호, 교육별번호 - 순번)

지역	발급번호	사이버	지역	발급번호	사이버
서 울	220101-0000	2201**-	부 산	220201-0000	2202**-
인 천	220301-0000	2203**-	대구·경북	220401-0000	2204**-
광주·전남	220501-0000	2205**-	대전·충남	220601-0000	2206**-
울산·경남	220701-0000	2207**-	경 기	220801-0000	2208**-
강 원	220901-0000	2209**-	충북·세종	221001-0000	2210**-
전 북	221101-0000	2211**-	제 주	221201-0000	2212**-

- 사이버교육 과정별 발급번호(지역번호 구분 포함)

교육과정	대기			수질				소음진동
	전문	일반	면제	전문	일반	운수세차	위탁면제	
발급번호	81	41	61	91	71	31	21	11

■ 보충교육 통보

○ 교육기관은 1차 교육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행정기관은 교육불참자에게 보충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충교육 일정을 통보

* 행정기관으로부터 선발되어 교육 안내를 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한 사람

○ 보충교육은 당해 연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합교육으로 편성이 곤란한 경우, 원격교육(사이버교육 또는 화상교육)으로 실시

○ **보충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선발기관에서 법정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 : '93.7.23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권고)

■ 교육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 결과보고

- 교육기관은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대기) 또는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수질), 31일까지 (소음·진동)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아니한 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100만원(대기), 시·도지사가 100만원(수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만원(소음·진동)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대기 교육	전문과정 (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과정	(14시간)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면제시설 (6시간)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수질 교육	전문과정 (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과정	(14시간)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6시간)	운수세차	•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4시간)	전량위탁 또는 방지시설 면제 등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소음·진동 교육 (6시간)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 "교육대상의 사업장 구분"은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을 근거로 편성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분류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비고
대기	1종	80톤이상/년	• 대기환경기사 1인	
	2종	20-80톤/년	•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3종	10-20톤/년	• 대기환경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3년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4종	2-10톤미만/년	•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일반보일러만 설치			• 5종 사업장 기술인
	먼지만 발생 사업장			
수질	1종	2,000㎥이상/일	• 수질환경기사 1인	•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3종 기술인 •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2종	700-2,000	•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3종	200-700	• 수질환경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3년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4,5종 기술인 •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4종	50-200	•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일 초과 배출사업장) •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 4,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1,2종		• 3종 사업장 기술인
		3종		• 4,5종 사업장 기술인
		4,5종		• 4,5종 사업장 기술인
소음·진동 교육			•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총 동력 합계 3,750kW 이상 사업장 :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관리 책임자

4 세부 교육과정

■ 대기 일반(면제)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탄소중립 대응		2
	직무 분야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2
	계			6

■ 대기 일반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45,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4~5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탄소중립 대응		2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3
	직무 분야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2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행정절차 실무·실습		1
	계			14

■ 대기 전문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2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90,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1~3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탄소중립 대응	2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3
		통합환경관리제도	3
		화학물질 안전관리	2
	직무 분야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3
		자원순환과 에너지	3
		악취 및 VOC 제어기술	3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측정분석기술	2
		행정절차 실무·실습(또는 사례발표·토의)	1
	계		28

■ 수질 일반(위탁·면제)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방지시설 면제 및 전량 위탁처리, 공동처리시설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직무 분야	위탁폐수의 적정관리	2
	계		4

■ 수질 일반(운수·세차)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운수업 등 세차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직무 분야	세차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2
		세차시설 유지관리 및 대표사례		2
	계			6

■ 수질 일반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45,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4~5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수질오염 사고대응		2
		통합환경관리제도		3
	직무 분야	오염물질 특성 및 폐수처리기술		2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행정절차 실무·실습		1
	계			14

■ 수질 전문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2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90,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1~3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탄소중립 대응	2
		수질오염 사고대응	2
		통합환경관리제도	4
	직무 분야	물리·화학적 폐수처리기술	3
		생물학적 폐수처리기술	3
		고도처리기술	3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측정분석기술	2
		행정절차 실무·실습	1
		사례발표·토의	2
	계		28

■ 소음·진동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소음·진동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직무 분야	소음·진동 발생원인 및 저감기술	2
		소음·진동 방지대책	2
	계		6

5 강사 구성

교육 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대기 전문 과정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부(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유역(지방)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부	
	통합환경관리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검사부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전학송 이경호 이용기	HS환경기술사사무소 대표(대기기술사) ㈜에덴 기술이사(대기기술사) 강호엔지니어링 부사장(대기기술사)	
	자원순환과 에너지	박성복 서성석	한국환경기술단 대표(대기기술사) 티에스환경기술원(대기기술사)	
	악취 및 VOC 제어기술	차명호 서재식	지테크㈜ 대표(대기기술사) ENVI컨설팅 대표(대기기술사)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박성복 송 종	한국환경기술단 대표(대기기술사)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측정분석기술	나경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일화학엔환경 연구소장(공학박사)	
수질 전문 과정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부(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유역(지방)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통합환경관리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물리·화학적 폐수처리	이지형 이일국 전건	더맑은환경컨설팅 대표(수질기술사) 한국환경진단연구소 부사장(수질기술사) ㈜동명기술공단 이사(수질기술사)	
	생물학적 폐수처리	오제식 정형숙	동일환경기술 대표(수질기술사) 수질기술사	
	고도처리	권용웅 양용운 이일국	바이오토닉이엔씨 대표(수질기술사)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한국환경진단연구소 부사장(수질기술사)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정지현	(사)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수질기술사)	

교육 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기술		고광범 설동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공학박사)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수질오염 사고대응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부	
	측정분석기술		나경호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일화학엔환경 연구소장(공학박사)	
서울 본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구청 환경과 인천시 대기보전과 팀장 제주도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강유역환경청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성복 이용기 배재관	한국환경기술단 대표이사(대기기술사) 강호엔지니어링 부사장(대기기술사) ㈜에코엔지니어링 차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전학송 서재식 이경호	HS환경기술사사무소 대표(대기기술사) ENVI컨설팅 대표(대기기술사) ㈜에덴 기술이사(대기기술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한강유역환경청 및 구청 환경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수질환경과 제주도 환경정책과	
		수질오염 사고대응	김진근	한국환경공단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정지현 정형숙	(사)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수질기술사) 수질기술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오제식 이일국	동일환경기술 대표이사(수질기술사) 한국환경진단연구소 부사장(수질기술사)	
		세차폐수 관리기술	오제식 권성한	동일환경기술 대표이사(수질기술사) 경일종합기술공사㈜ 기술이사	
		위탁폐수 적정관리	정지현 이일국 정형숙	(사)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수질기술사) 한국환경진단연구소 부사장(수질기술사) 수질기술사	
	소음 진동	소음진동 법령		환경부 및 구청 환경과 인천시 환경정책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손정곤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방지대책	민병률	소리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산 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공명길	부산시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장영환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교육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오염물질 제어기술	전보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부산환경공단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이건표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전문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한국환경공단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지형	더맑은환경컨설팅 대표	
		방지시설 운영관리		부산환경공단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공명길	부산시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장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방지대책	이승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구경북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류재욱 황찬희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사무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박노국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현철	지구이앤씨㈜ 대표이사(공학박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이진우	㈜천마 기술이사(공학박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강병정 김종열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사무관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사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김장희	부산인적자원전문학교 전임교수(공학박사) (前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양용운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명예교수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김영태	㈜태림이엔지 부사장(공학박사)	
		세차폐수 관리기술	양용운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명예교수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위탁폐수 적정관리	김지훈 장일헌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교수 ㈜청수 기술연구소장(공학박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류재욱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사무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갑수	영남교통정책연구원 이사장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방지대책	이배복	㈜중앙환경기술 연구소장(공학박사)	
광주전남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주성원 박승영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 사무관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사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송 종 이준호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사무관	
		오염물질 제어기술	송 종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방지시설 운영관리	이재형	보람이엔티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심경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팀장	

교육 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조영관	전(前)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송 종 박무성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한국환경공단 광주지역본부 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정원삼 설동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설동화 김인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태림인더스트리 기술고문	
	소음 진동	소음진동 법령	고준일 김인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태림인더스트리 기술고문	
		발생원별 저감기술	최형일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대책	김회한	정우엔텍연구소 소장	
대전 충남 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이윤구	前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윤구	前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영성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박영성 서성석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티에스환경기술원 대표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이윤구	前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강민필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유역관리부 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안상형	㈜농심 아산공장 부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고명한	㈜에이앤티21 대표	
	소음 진동	소음진동 법령			
		발생원별 저감기술			
		방지대책			
울산 경남 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용길	창원시 환경정책과 계장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미세먼지 저감대책	하문경	경남도청 기후대기과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강성규 조상원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방지시설 운영관리	하문경 전정민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다인테크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김종식	(前) 창원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계장	

교육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수질오염 사고대응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봉섭 하문경	라온GS 대표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강성규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창원시 환경정책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승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부	
		방지대책	하문경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경기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기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오염물질 제어기술	송일석 이용기	영진환경산업 주식회사 본부장 강호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김홍수	우성이엔티 대표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원증연	수원컨벤션센터 대외협력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손대희	엔솔파트너스 대표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방지시설 운영관리	하은용 이일국	영진환경산업㈜ 대표이사 한국환경진단연구소 부사장(기술사)	
		위탁폐수 적정관리	오제식	동일환경기술(주) 대표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원증연 서정원	수원시 기후대기과 과장 남양주시 화도읍 산업환경과 과장	
		발생원별 저감기술	손정곤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방지대책	송일석	영진환경산업 주식회사 본부장	
강원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주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정학수	(자)대한환경건설 기술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권영준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근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장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주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정학수	(자)대한환경건설 기술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최용범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송인수	㈜만도 원주공장 환경팀 차장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주무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석종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 연구사	
		방지대책			
충북세종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안세연 최주선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교육 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협회		미세먼지 저감대책	박종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황갑성	충청대학교 식의약품분석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박만용	충청종합환경(주)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안세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한국환경공단 유역관리부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철규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성운용	㈜유진환경 대표이사	
	소음 진동	소음진동 법령		환경부 생활환경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대책	박만용	충청종합환경(주) 대표이사	
전북 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 사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비오	그린에코텍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임현재	㈜푸른엔텍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 사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서형석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관	
		오염물질 제어기술	권지영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한상온	(유)금영이엔텍 대표이사	
	소음 진동	소음진동 법령	김종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박사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영완	데시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방지대책			

6 2022년 추진계획

■ 교육대상 인원

○ 대기 환경기술인

구분	2022년				2021년				증감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18,428	1,946	14,119	2,363	16,999	2,159	12,563	2,277	1,429	△213	1,556	86
서 울	880	30	700	150	964	24	680	260	△84	6	20	△110
부 산	837	79	698	60	917	77	774	66	△80	2	△76	△6
대 구	785	38	712	35	641	40	575	26	144	△2	137	9
인 천	1,492	113	1,342	37	2,068	285	1,680	103	△576	△172	△338	△66
광 주	327	23	278	26	410	60	310	40	△83	△37	△32	△14
대 전	238	20	215	3	213	12	190	11	25	8	25	△8
울 산	410	59	312	39	452	104	322	26	△42	△45	△10	13
세 종	85	15	50	20	105	15	65	25	△20	-	△15	△5
경 기	5,082	542	3,710	830	4,610	580	3,300	730	472	△38	410	100
강 원	481	34	397	50	436	30	350	56	45	4	47	△6
충 북	835	90	625	120	815	95	580	140	20	△5	45	△20
충 남	1147	141	784	222	670	92	383	195	477	49	401	27
전 북	949	182	688	79	942	196	713	33	7	△14	△25	46
전 남	795	106	586	103	640	140	440	60	155	△34	146	43
경 북	1,554	138	1,126	290	1,421	164	1,010	247	133	△26	116	43
경 남	2,346	331	1,746	269	1,534	238	1,061	235	812	93	685	34
제 주	185	5	150	30	161	7	130	24	24	△2	20	6

○ 수질 환경기술인

구분	2022년				2021년				증감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20,131	1,091	4,221	14,819	18,352	1,153	4,055	13,144	1,779	△62	166	1,675
서 울	1,350	50	130	1,170	1,023	50	140	833	327	-	△10	337
부 산	978	30	83	865	826	24	124	678	152	6	△41	187
대 구	1,095	35	168	892	758	17	162	579	337	18	6	313
인 천	1,370	82	453	835	1,670	208	483	979	△300	△126	△30	△144
광 주	403	14	41	348	655	55	100	500	△252	△41	△59	△152
대 전	355	35	58	262	433	10	33	390	△78	25	25	△128
울 산	548	59	141	348	432	31	69	332	116	28	72	16
세 종	90	5	20	65	100	10	25	65	△10	△5	△5	-
경 기	5,274	300	900	4,074	4,730	300	830	3,600	544	-	70	474
강 원	880	22	303	555	654	10	125	519	226	12	178	36
충 북	740	65	260	415	760	50	275	435	△20	15	△15	△20
충 남	980	90	223	667	786	39	239	508	194	51	△16	159
전 북	1,286	112	462	712	1,171	96	450	625	115	16	12	87
전 남	821	48	281	492	595	95	150	350	226	△47	131	142
경 북	1,725	90	358	1,277	1,733	95	354	1,284	△8	△5	4	△7
경 남	1,951	49	260	1,642	1,761	57	411	1,293	190	△8	△151	349
제 주	285	5	80	200	265	6	85	174	20	△1	△5	26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구분	2022년	2021년	증감
계	8,132	7,205	1,283
서 울	150	120	30
부 산	255	350	△95
대 구	50	83	△33
인 천	327	297	30
광 주	23	120	△97
대 전	9	16	△7
울 산	109	92	17
세 종	45	45	-
경 기	2,600	2,350	250
강 원	168	155	13
충 북	435	505	△70
충 남	808	488	320
전 북	577	604	△27
전 남	398	130	268
경 북	905	737	168
경 남	1,171	984	187
제 주	102	129	△27

■ 교육기관별 계획

교육기관	대상 지역	교육계획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총 계		46,691	134	18,428	60	20,131	60	8,132	14
서울본회	소 계	6,141	25	2,557	11	3,005	12	579	2
	서 울	2,380	11	880	5	1,350	5	150	1
	인 천	3,189	12	1,492	4	1,370	7	327	1
	제 주	572	2	185	2	285	-	102	-
지역협회 계		40,550	109	15,871	49	17,126	48	7,553	12
부산협회	부 산	2,070	6	837	3	978	3	255	-
대구경북 협 회	소 계	6,114	10	2,339	4	2,820	5	955	1
	대 구	1,930		785		1,095		50	
	경 북	4,184		1,554		1,725		905	
광주전남 협 회	소 계	2,767	7	1,122	3	1,224	4	421	-
	광 주	753		327		403		23	
	전 남	2,014		795		821		398	
대전충남 협 회	소 계	3,537	3	1,385	2	1,335	1	817	-
	대전	602		238		355		9	
	충남	2,935		1,147		980		808	
울산경남 협 회	소 계	6,535	12	2,756	7	2,499	4	1,280	1
	울 산	1,067		410		548		109	
	경 남	5,468		2,346		1,951		1,171	
경기협회	경 기	12,956	53	5,082	22	5,274	22	2,600	9
강원협회	강 원	1,529	3	481	1	880	2	168	-
충북세종 협 회	소 계	2,230	10	920	4	830	5	480	1
	세 종	220		85		90		45	
	충 북	2,010		835		740		435	
전북협회	전 북	2,812	5	949	3	1,286	2	577	-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 사이버교육 과정

구분	내용
일정편성	• 환경기술인 전문과정 : 연 4회 운영(정규편성 3월, 6월, 9월, 보충편성 12월) • 환경기술인 일반과정 : 월 1회 운영(정규편성 3월~11월, 보충편성 12월)
교육기간	• 접수기간 : 교육일 4주 전부터 교육일 전날까지 • 수강기간 : 과정에 따라 7일 또는 14일

교육	기수	과정	일정	교육기간		인원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1,946
	1	전문대기 환경기술인	5월	4.11~5.9	5.10~5.23	700
	2		7월	6.6~7.4	7.5~7.18	700
	3		10월	9.5~10.3	10.4~10.17	546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1,091
	1	전문수질 환경기술인	4월	3.21~4.18	4.19~5.2	400
	2		7월	6.13~7.11	7.12~7.25	400
	3		10월	9.12~10.10	10.11~10.24	291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14,119
	1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3월	2.7~3.7	3.8~3.21	1,600
	2		4월	3.7~4.4	4.5~4.18	1,600
	3		5월	4.11~5.9	5.10~5.23	1,600
	4		6월	5.9~6.6	6.7~6.20	1,600
	5		7월	6.6~7.4	7.5~7.18	1,600
	6		8월	7.4~8.1	8.2~8.15	1,600
	7		9월	8.1~8.29	8.30~9.12	1,600
	8		10월	9.5~10.3	10.4~10.17	1,600
	9		11월	10.3~10.31	11.1~11.14	1,319

교육	기수	과정	일정	교육기간		인원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2,363
	1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3월	2.7~3.7	3.8~3.14	270
	2		4월	3.7~4.4	4.5~4.11	270
	3		5월	4.11~5.9	5.10~5.16	270
	4		6월	5.9~6.6	6.7~6.13	270
	5		7월	6.6~7.4	7.5~7.11	270
	6		8월	7.4~8.1	8.2~8.8	270
	7		9월	8.1~8.29	8.30~9.5	270
	8		10월	9.5~10.3	10.4~10.10	270
	9		11월	10.3~10.31	11.1~11.7	203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4,221
	1	일반수질 환경기술인	3월	2.14~3.14	3.15~3.28	470
	2		4월	3.21~4.18	4.19~5.2	470
	3		5월	4.18~5.16	5.17~5.30	470
	4		6월	5.16~6.13	6.14~6.27	470
	5		7월	6.13~7.11	7.12~7.25	470
	6		8월	7.11~8.8	8.9~8.22	470
	7		9월	8.8~9.5	9.6~9.19	470
	8		10월	9.12~10.10	10.11~10.24	470
	9		11월	10.10~11.7	11.8~11.21	461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6,597
	1	일반수질(운수·세차) 환경기술인	3월	2.14~3.14	3.15~3.21	740
	2		4월	3.21~4.18	4.19~4.25	740
	3		5월	4.18~5.16	5.17~5.23	740
	4		6월	5.16~6.13	6.14~6.20	740
	5		7월	6.13~7.11	7.12~7.18	740
	6		8월	7.11~8.8	8.9~8.15	740
	7		9월	8.8~9.5	9.6~9.12	740
	8		10월	9.12~10.10	10.11~10.17	740
	9		11월	10.10~11.7	11.8~11.14	677

교육	기수	과정	일정	교육기간		인원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8,222
	1	일반수질(위탁·면제) 환경기술인	3월	2.14~3.14	3.15~3.21	950
	2		4월	3.21~4.18	4.19~4.25	950
	3		5월	4.18~5.16	5.17~5.23	950
	4		6월	5.16~6.13	6.14~6.20	950
	5		7월	6.13~7.11	7.12~7.18	950
	6		8월	7.11~8.8	8.9~8.15	950
	7		9월	8.8~9.5	9.6~9.12	950
	8		10월	9.12~10.10	10.11~10.17	950
	9		11월	10.10~11.7	11.8~11.14	622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8,132
	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3월	2.7~3.7	3.8~3.14	900
	2		4월	3.7~4.4	4.5~4.11	900
	3		5월	5.2~5.30	5.31~6.6	900
	4		6월	5.30~6.27	6.28~7.4	900
	5		7월	6.27~7.25	7.26~8.1	900
	6		8월	7.25~8.22	8.23~8.29	900
	7		9월	8.22~9.19	9.20~9.26	900
	8		10월	9.26~10.24	10.25~10.31	900
	9		11월	10.24~11.21	11.22~11.28	932

○ 전문관리자 과정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서울본회 (서울)		계		2회	-
	44	전문수질	6.21~6.24	서울	-
	111	전문대기	11.1~11.4	〃	-
서울본회 (인천)		계		2회	-
	67	전문대기	8.9~8.12	인천	-
	128	전문수질	11.29~12.2	〃	-
부산협회		계		2회	-
	98	전문대기	10.11~10.14	부산	-
	125	전문수질	11.22~11.25	〃	-
대구경북협회		계		2회	-
	31	전문대기	5.24~5.27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68	전문수질	8.9~8.12	〃	-
광주전남협회		계		2회	-
	84	전문수질	9.20~9.23	광주	-
	103	전문대기	10.18~10.21	〃	-
대전충남협회		계		2회	-
	115	전문수질	11.8~11.1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123	전문대기	11.22~11.25	〃	-
울산경남협회		계		4회	-
	13	전문대기	4.19~4.22	경남	-
	25	전문수질	5.17~5.20	경남	-
	41	전문대기	6.14~6.17	울산	-
	116	전문대기	11.8~11.11	경남	-
경기협회		계		5회	-
	3	전문대기	3.29~4.1	수원	-
	8	전문수질	4.11~4.14	수원	-
	40	전문대기	6.13~6.16	시흥	-
	83	전문대기	9.19~9.22	수원	-
	99	전문수질	10.11~10.14	시흥	-
충북세종협회		계		2회	-
	45	전문대기	6.21~6.24	청주	-
	71	전문수질	8.23~8.26	〃	-
전북협회		계		2회	
	50	전문대기	6.28~7.1	전주상공회의소	-
	62	전문수질	7.19~7.22	〃	-

○ 일반관리자 과정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서울본회(서울)		계		9회	-
	15	수질(2일)	4.26~4.27	서울	-
	18	대기(1일·면제)	4.29	〃	-
	51	대기(2일)	6.28~6.29	〃	-
	59	수질(2일)	7.12~7.13	〃	-
	73	대기(2일)	8.24~8.25	〃	-
	124	수질(운수·세차)	11.22	〃	-
	130	수질(위탁·면제)	12.6	〃	-
	131	소음·진동	12.7	〃	-
	132	대기(1일·면제)	12.8	〃	-
서울본회(인천)		계		10회	-
	9	대기(2일)	4.12~4.13	인천	-
	10	수질(운수·세차)	4.14	〃	-
	11	소음·진동	4.15	〃	-
	32	수질(위탁·면제)	5.24	〃	-
	48	수질(2일)	6.23~6.24	〃	-
	54	대기(2일)	7.5~7.6	〃	-
	77	수질(2일)	8.31~9.1	〃	-
	110	수질(운수·세차)	10.31	〃	-
	112	수질(위탁·면제)	11.1	〃	-
	113	대기(1일·면제)	11.3	〃	-
서울본회(제주)		계		2회	-
	93	대기(1일·면제)	9.27	제주	-
	94	대기(2일)	9.27~9.28	〃	-
부산협회		계		4회	-
	91	대기(1일·면제)	9.27	부산상공회의소	-
	92	대기(2일)	9.27~9.28	〃	-
	108	수질(위탁·면제)	10.25	〃	-
	117	수질(2일)	11.8~11.9	〃	-
대구경북협회		계		8회	-
	23	대기(2일)	5.12~5.13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37	수질(2일)	6.9~6.10	〃	-
	46	대기(1일·면제)	6.21	〃	-
	52	수질(운수·세차)	7.1	〃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64	수질(위탁·면제)	7.22	〃	-
	66	소음·진동	7.26	〃	-
	106	대기(2일)	10.20~10.21	〃	-
	114	수질(위탁·면제)	11.4.	〃	-
광주전남협회		계		5회	-
	100	대기(2일)	10.12~10.13	광주	-
	109	수질(2일)	10.26~10.27	〃	-
	118	대기(1일·면제)	11.8	〃	-
	119	수질(운수·세차)	11.9	〃	-
	120	수질(위탁·면제)	11.9	〃	-
대전충남협회		계		1회	-
	86	대기(2일)	9.22~9.23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울산경남협회		계		8회	-
	6	일반대기(2일)	4.7~4.8	경 남	-
	17	일반수질(2일)	4.27~4.28	경 남	-
	20	대기(1일.면제)	5.3	경 남	-
	49	일반대기(2일)	6.23~6.24	울 산	-
	121	일반대기(2일)	11.16~11.17	경 남	-
	129	수질(운수.세차)	12.1	경 남	-
	133	소음진동	12.8	경 남	-
	134	수질(위탁.면제)	12.9	경 남	-
경기협회		계		48회	-
	1	대기(2일)	3.22~3.23	수원	-
	2	소음·진동	3.28	수원	-
	4	수질(2일)	4.4~4.5	수원	-
	5	대기(2일)	4.6~4.7	의정부	-
	7	수질(위탁·면제)	4.8	수원	-
	12	대기(1일·면제)	4.18	수원	-
	14	수질(운수·세차)	4.22	수원	-
	16	대기(2일)	4.26~4.27	시흥	-
	19	소음·진동	4.29	수원	-
	21	대기(2일)	5.9~5.10	수원	-
	24	수질(위탁·면제)	5.13	수원	-
	26	수질(2일)	5.17~5.18	시흥	-
	29	대기(1일·면제)	5.20	수원	-
	30	소음·진동	5.23	수원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33	수질(위탁·면제)	5.25	의정부	-
	34	대기(2일)	5.26~5.27	시흥	-
	35	수질(운수·세차)	5.30	수원	-
	36	대기(2일)	6.7~6.8	수원	-
	38	소음·진동	6.9	의정부	-
	39	수질(위탁·면제)	6.10	수원	-
	43	소음·진동	6.20	수원	-
	47	대기(2일)	6.22~6.23	의정부	-
	53	소음·진동	7.4	시흥	-
	55	대기(2일)	7.5~7.6	시흥	-
	56	대기(1일·면제)	7.7	의정부	-
	58	수질(위탁·면제)	7.8	의정부	-
	60	수질(운수·세차)	7.12	의정부	-
	61	대기(2일)	7.18~7.19	수원	-
	63	수질(운수·세차)	7.21	시흥	-
	65	수질(위탁·면제)	7.22	수원	-
	69	대기(2일)	8.16~8.17	시흥	-
	70	수질(2일)	8. 18~19	의정부	-
	72	소음·진동	8. 23	시흥	-
	74	수질(위탁·면제)	8. 25	의정부	-
	75	수질(운수·세차)	8. 26	수원	-
	76	대기(2일)	8. 30~31	수원	-
	78	대기(1일·면제)	9. 5	수원	-
	79	대기(2일)	9. 7~8	의정부	-
	80	수질(위탁·면제)	9. 14	수원	-
	81	수질(2일)	9. 15~16	수원	-
	85	대기(2일)	9. 21~22	김포	-
	88	수질(위탁·면제)	9. 23	수원	-
	90	수질(운수·세차)	9. 26	수원	-
	95	소음·진동	9. 29	수원	-
	96	대기(2일)	10. 4~5	수원	-
	97	수질(위탁·면제)	10. 7	의정부	-
	105	소음·진동	10. 19	시흥	-
	107	대기(2일)	10. 20~21	시흥	-
강원협회		계		3회	-
	87	수질(2일)	9.22~9.23	원주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101	수질(운수·세차)	10.12	〃	-
	102	대기(2일)	10.13~10.14	〃	-
충북세종협회		계		8회	-
	22	수질(2일)	5.10~5.11	청주	-
	28	대기(2일)	5.19~5.20	〃	-
	82	대기(2일)	9.15~9.16	〃	-
	89	대기(1일·면제)	9.23	〃	-
	104	수질(2일)	10.18~10.19	〃	-
	122	수질(위탁·면제)	11.16	〃	-
	126	소음·진동	11.22	〃	-
	127	수질(운수·세차)	11.23	〃	-
전북협회		계		3회	
	27	대기(2일)	5.17~5.18	전주상공회의소	-
	42	수질(2일)	6.15~6.16	〃	-
	57	대기(2일)	7.7~7.8	〃	-

■ 연간 교육일정표

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	전문 (4일)		3.29-4.1 (수원)	19-22 (창원)	24~27 (대구)	13-16 (시흥) 14-17 (울산) 21-24 (청주) 6.28-7.1 (전주)		9-12 (인천)	19-22 (수원)	11-14 (부산) 18-21 (광주)	1-4 (서울) 8-11 (창원) 22-25 (대전)	
	일반 (2일)	1주										
		2주		6-7 (의정부) 7-8 (창원)	9-10 (수원) 12-13 (대구)	7-8 (수원)	5-6 (인천) 5-6 (시흥) 7-8 (전주)		7-8 (의정부)	4-5 (수원)		
		3주		12-13 (인천)	17-18 (전주) 19-20 (청주)			16-17 (시흥)	15-16 (청주)	12-13 (광주) 13-14 (원주)	16-17 (창원)	
		4주	22-23 (수원)		26-27 (시흥)	22-23 (의정부) 23-24 (울산)	18-19 (수원)	24-25 (서울)	21-22 (김포) 22-23 (대전)	20-21 (시흥) 20-21 (대구)		
		5주		26-27 (시흥)		28-29 (서울)		30-31 (수원)	27-28 (부산) 27-28 (제주)			
	일반 (1일)			18 (수원) 29 (서울)	3(창원) 20 (수원)	21 (대구)	7 (의정부)		5(수원) 23 (청주) 27 (부산) 27 (제주)		3(인천) 8(광주)	8(서울)
수질	전문 (4일)			11-14 (수원)	17-20 (창원)	21-24 (서울)	19-22 (전주)	9-12 (대구) 23-26 (청주)	20-23 (광주)	11-14 (시흥)	8-11 (대전) 22-25 (부산) 11.29-12.2	

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천)	
일반 (2일)	1주										
	2주		4-5 (수원)	10-11 (청주)	9-10 (대구)					8-9 (부산)	
	3주			17-18 (시흥)	15-16 (전주)	12-13 (서울)	18-19 (의정부)	15-16 (수원)			
	4주				23-24 (인천)			22-23 (원주)	18-19 (청주)		
	5주		26-27 (서울) 27-28 (창원)				8.31-9.1 (인천)		26-27 (광주)		
운수·세차 (1일)			14 (인천) 22 (수원)	30 (수원)		1(대구) 12 (의정부) 21 (시흥)	26 (수원)	26 (수원)	12 (원주) 31 (인천)	9(광주) 22 (서울) 23 (청주)	1(창원)
위탁·면제 (1일)			8(수원)	13 (수원) 24 (인천) 25 (의정부)	10 (수원)	8 (의정부) 22 (대구) 22 (수원)	25 (의정부)	14 (수원) 23 (수원)	7(의정부) 25 (부산)	1(인천) 4(대구) 9(광주) 16 (청주)	6(서울) 9(창원)
소음·진동		28 (수원)	15 (인천) 29 (수원)	23 (수원)	9 (의정부) 20 (수원)	4 (시흥) 26 (대구)	23 (시흥)	29 (수원)	19 (시흥)	22 (청주)	7(서울) 8(창원)

교육기관 주소 및 연락처

교육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서울본회 (04799)	환경보전협회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4F	(02) 3407-1500	(02) 3409-8865	kepaedu@epa.or.kr
부산협회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내)	(051) 507-4755/6	(051) 507-4757	bepa2@epa.or.kr
대구·경북협회 (43008)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07호)	(053) 812-2383/4	(053) 812-2385	mkhog23@epa.or.kr
광주·전남협회 (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첨단와이어스파크 B동 1103호)	(062) 369-5580	(062) 369-5585	kjepa@hanmail.net
대전·충남협회 (34013)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7(관평동) (대덕비즈센터 내)	(042) 486-8057/8	(042) 486-8059	kepa21@hanmail.net
울산·경남협회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용호동) (오피스플라자빌딩 302호)	(055) 287-9752/3	(055) 287-9754	usgnepa7@epa.or.kr
경기협회 (1650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2~1005호)	(031) 253-0312/4	(031) 629-7424	kaia777@epa.or.kr
강원협회 (24387)	강원 춘천시 후석로44번길 6(후평동)	(033) 251-2676	(02) 3409-8865	kepaedu@epa.or.kr
충북·세종협회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4 (비하동) (현대오피스텔빌딩 3층)	(043) 231-9577/8	(043) 231-9579	choong@epa.or.kr
전북협회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내)	(063) 285-3083	(063) 288-3233	wildleejh@epa.or.kr

관 련 법 규

- 대기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 수질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환경기술인교육 관계법규 요약

대기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 5종사업장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 ·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 · 2종 · 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 · 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수질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 · 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 ·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 · 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

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 ·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1. 10. 14.〉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누.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60	80	10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1. 11. 23.〉

과태료 부과기준(제85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거.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허.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2. 17.〉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200	250	300
너.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	60	80	100

※ 수질환경기술인 최초교육 인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2.9.] [환경부령 제397호, 2011.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가 환경기술인 및 기술요원을 고용한 때에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고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 대상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받은 교육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 등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폐수 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농가제품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3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요원을 고용한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고용한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에게"를 "기술요원(이하 "환경기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을 "교육을 받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초교육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공고 제2019-900호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5종 사업장의 배출구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3. 측정유예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측정유예대상은 유예기간 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예기간 내 자가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기업규제완화법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기업규제완화법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기업규제완화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

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대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물환경보전법」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질의회신사례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공통사항

Q 환경기술인 겸임 가능여부 2019.05.18 16:10:37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폐기물처리기사) 와 대기배출시설 기술자격(대기환경기사)보유시 겸임이 가능한가요?

A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의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자격 보유자는 대기배출시설 또는 수집운반(지정)의 허가요건 기술자격과 겸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Q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직 여부 2019.01.26 13:21:38

대기, 수질 분야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관련 별표 17에 따라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 별표 비고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과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의 겸임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대기환경기술인이나 수질환경기술인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환경기술인 고용 및 임명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성명 OOO · 등록일 2018.07.13 17:14:00 · 처리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기술인 고용 및 임명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1AA-1806-345707]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별표10에 의한 요건에 합당한 자로서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자를 2명이상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1명 및 나머지1명을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차 의문스러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환경기술인의 고용에 있어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1명을 채용한 경우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01. 17)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 이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상 채용 또는 1명 자체고용 + 1명 위탁관리대행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별표10에 의한 요건에 합당한 자로서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자를 2명이상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1명 및 나머지1명을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을 했을 경우 환경기술인 교육 또한 고용된자 2명 또는 자체적으로 1명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 1명이 선임되었을 경우 각각 교육을 필해야 하는지요?

처리 결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807-21798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 질의1)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 의해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 보건관리인에 해당되는 자를 2명이상 채용해야하는 사업장이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의 대기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겸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2명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1명의 기술인이 해당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질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에 따라 각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최초 선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날짜를 기준으로 법정교육 주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일 교육을 받지 않은 환경기술인을 새로 임명할 경우 선임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관련>
○ 사업자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 및「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른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관리 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 다만, 기술인력 1인당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관리 대행기관 기술인력은 모두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 수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통승환 주무관, 044-201-6912), 환경연구개발과(목인숙 주무관, 044-201-66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제40조(환경기술인)

폐수배출시설 3종사업장 1곳, 관리대행기관 지정 시 환경기술인 별도 고용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폐수배출시설 3종사업장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이 필요합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할 경우
3종사업장(1곳)이라도 환경기술인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6-14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수질환경기술인 업무 관리대행위탁 시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별도의 환경기술인은 임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박세영, 044-201-7063, psy0325@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6-17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환경기술인 겸임 관련 질

안녕하십니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 제8호에는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물환경보전법의 수질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대기환경기술인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대기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2)물환경보전법의 수질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2021-07-13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환경기술인의 겸직"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7] 비고8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겸임할 수 있으며, 수질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대기환경기술인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의 겸임은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 각 개별법에서 겸임 허용을 규정하지 않아 겸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박세영, 044-201-7063), 화학안전과(김경태, 044-201-68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2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일 경우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 이수 관련 문의

만약 2개(A,B사 둘다 5종)의 폐수배출업소가 하나의 공동방지시설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다면
(B사가 A사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운영중이고,
B사의 폐수처리시설을 A,B사가 같이 공동방지시설로 사용중,
A, B사 둘다 따로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가 있음)

이럴 경우
하나의 공동방지시설에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두 곳에서 따로 했기 때문에서
환경기술인을 A, B사 따로 임명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동방지시설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A,B사 공통 1명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 따로 임명을 해야한다면 A,B사 따로 임명된 기술인 마다 각각 법정교육 이수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020.03.16 11:23:02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035987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공동방지시설 운영 시 환경기술인 임명 및 법정교육 이수"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각각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각각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경기술인 과정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김형준, 044-201-7065, khj1105@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환경기술인 선임주체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질의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신고)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별도배출허용기준과 그 외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박세영, 044-201-7063, psy0325@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환경기술인 선임시 문제점

1. 준종합병원이상의 업체에서 환경기술인을 고용하여 폐수처리장 운영시 환경기술인을 관리대행기관(기술용역업체)가 아닌
일반인력용역업체 소속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가능한가요?
2. 만약, 일반인력용역업체에 소속된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법적제제가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환경기술인 선임시 오염방지시설 관리대행기관에 맡기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용역업체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가능한지요? (필히, 사업장 소속직원 채용 여부 확인 요망합니다)

2020.03.23 08:41:31

■ 대기 분야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 성명 OOO · 등록일 2018.04.13 10:08:55 · 처리상태 완료

□질의 제목 :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1. 시행규칙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2. 질의내용 :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해까지 교육을 받으면되는지,
- 아니면 신규교육 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날까지 교육을 받으면되는지요.

처리 결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804-17739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에 따라 각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최초 선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날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홍승환 주무관, 044-201-69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시설 가동이 없거나, 짧을 경우의 대기측정 주기 건

귀사에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대기자가측정 주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대기자가측정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때 측정을 실시하여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만약 아래의 예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래-
예시 1) 측정 주기 내 작업이 한번도 없을 경우
예시 2) 측정 주기 내 작업은 있으나, 측정 시간에 비해 현장작업 시간이 짧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먼지같은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40분이상 또는 400L이상)에 따라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업시간이 짧아 측정을 못했을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1-05-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자가측정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대기배출시설을 실제로 폐쇄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정기간 가동하지 않는 경우 가동중지와 관련한 자가측정, 운영일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참고로, 동 별표11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에 배출시설 가동중지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에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면 동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주기에 시설을 가동한다면 가동하는 시기에 맞추어 자가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진규(044-201-69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5-28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관련법령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 자가측정관련 질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 입니다.
최근 자가측정 관련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구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집진시설(활성탄 흡착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면제 시설 이지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면서 이 흡착시설을 이용하여 배출구를 설치 한다면
화성시에 대기오염방지 시설로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면제사업장이니까
신고하지 않고 집진시설을 사용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9-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변경신고 관련 사항"으로 보이며 보이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이라 할 지라도 방지시설을 설치·증설, 폐쇄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따라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모상호(044-201-69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18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관련법령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인원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육군 제3808부대는 폐기탄약을 소각처리하는 소각로를 운영하는 대기 2종 사업장입니다.
※ 소각시설- A : 일일 8시간 운영, 대기환경기술인 1명 선임 및 운용
향후 폐기탄약의 종류가 다양해서 소각시설-A에서 처리불가한 탄약을 처리하기위해서
소각시설-B를 건설하여 소각시설-A는 일일 8시간 가동 종료 후
연이어서 소각시설-B를 16시간 가동할 경우도 환경기술인을 1명 더 선임하여야 되는지요
소각시설-A 8시간, 소가시설-B 16시간 이므로 각각 일일 17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환경기술인 1명만 선임되어 있으면 괜찮은지요 ?

2020.08.27 21:29:59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 내용은 "환경기술인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의한 자격 요건에 합당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을 임명하여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비고 2에 따라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소각시설-A를 매일 8시간 가동하고 소각시설-A 종료 후 소각시설-B를 16시간 가동한다면 일일 24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창일(044-201-6906, rebirth@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질 분야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관련

· 성명 OOO · 등록일 2019.06.10 16:51:57 · 처리상태 완료

안녕하십니까?
입법예고된 위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1]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대상이 배출자(위탁자)의 업종이나 배출규모와 관계없이 소량이라도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모두 사용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2]
보일러 세관공사 시 발생된 세관폐수는 세관공사업체를 통해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이때 공사업체를 위탁자로하여 별지44호의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작성하게끔 하였으며 준공계 제출시 폐수위(수)탁 확인서 사본을 접수받아 위탁처리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공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도 위와 마찬가지로 공사업체가 위탁자로하여 작성하게끔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은 언제 OPEN되며 사전 사용자 교육과정은 없는지요?

처리 결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6-3177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①발생되는 폐수량과 상관없이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모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②폐수처리업체에게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대신 작성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③시스템 관련 사전 사용자 교육 여부"로 판단됩니다.

○ ①「물환경보전법」개정안 제66조의2제2항(시행일 2019.10.17.)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폐수발생량에 따른 차등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 고시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폐수처리업자가 폐수위탁사업자의 동의하에 시스템에 대신 입력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③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사용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수질관리과 오진석 주무관(044-201-70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수질환경기술인교육 이수기간

· 성명 OOO · 등록일 2019.04.12 16:12:35 · 처리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폐수배출시설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환경기술인 교육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환경기술인교육을 3년에 한번 받는거로 알고있어서 13년도에 교육이수하고 14년~16년 교육이수기간중 15년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16년까지는 이수가된거니 17년~19년도에 교육을 받으면되니까 올해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지자체에서 18년도에 교육을 안받은거로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67조와 시행규칙 93조의 규정에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 3년마다라는게 교육받은 해로부터 3년후라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16년에 받아야할것을
1년을 미리 앞당겨 받아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도 잘이수하고했는데 법령을 잘못이해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받지 않게 할수있는건 없나요?

처리 결과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2152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이수기간"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환경기술인 교육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날로 부터 1년이내 신규(최초)교육후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께서 '15년에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았다면 3년 이후인 '18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19년에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 환경기술인교육을 등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김은주, 044-201-7066, eunj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수질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기한 문의

· 성명 OOO · 등록일 2019.03.04 10:17:40 · 처리상태 완료

수질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기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3조의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경우
각각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1) 최초교육시 1년이내 실시의 뜻은 "365일(1년)"과 "다음해 12월 31일 이내" 중 어느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문의2) 보수교육의 경우 최초교육 후 3년이내란 뜻은 "1095일(3년 * 365일)"과 "햇수로 3년이 지난 해 이내" 중 어느것을 의미하는건가요?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

○ 답변내용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질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에서의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경우 각각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최초교육은 업무에 종사한 날이 2019년 3월 4일이라면 2020년 3월 3일까지 이수하셔야 하며,
○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전 까지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실시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김은주, 044-201-7066, eunj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환경부 민원 1AA-1605-192870 번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질문 드립니다.

배출시설로는
7. 낙농품제조가공시설, 아이스크림 및 식용 빙과류 제조시설
78.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실험시설
82. 위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사에서는 낙농품 제조 가공시설로 분류된 설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설비가 변경되어도 폐수배출량의 증가가 없고 생산되는 제품은 7번 배출시설 분류에 속하며 원료등도 기존에 사용하던 식품첨가물등의 원료들이므로 (원유,분유,당류 등) 수질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당사의 사례와 민원 (1AA-1605-192870)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에서 동일 분류코드 내 신규설비 설치 시, 폐수배출량 증가 X,수질오염물질 신규발생 X 인경우에도 추가 공정으로 보고 각각 허가 및 신고 여부에 대해 기 허가받은 시설과 동일한 분류코드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면 동일설비 노후 시 신규설비로 교체 시에도 변경신고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2021-04-28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118843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답변1)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당초 인·허가받은 7번 시설(낙농품제조가공시설)의 변경이 폐수량의 증감이 없고, 원료의 변경이 없어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될 여지도 없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답변2) 시설의 노후화로 기존시설 철거 후 동일한 규격의 새로운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재 설치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임희조, 044-201-706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5-18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폐수배출시설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폐수배출시설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개의 사업장(사업장A, B)에 입구가 하나이며, 그 입구에 세륜시설(사업장A의 소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세륜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2개의 사업장 모두 세륜시설에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개의 사업장만 신고하여 관리하면 될까요?

*사업장 배치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05-18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66521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로 이루어 지며,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 김은주, 044-201-70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5-21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기준 변경으로 인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현재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20년 2월 TOC가 추가되어 기존 설치된 시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현재 변경전 기준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을
① 2022년 12월까지 가축배출시설의 변경관련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다시 준공 후 준공채수까지 시행해야 하는지
② 기존 시설의 경우 인허가 변경 없이 수질기준만 적정하게 유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5-2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1AA-2105-0785592)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관련하여 2023년 1월 기준 변경에 따른 준공 및 준공채수 검사를 해야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20년 2월 20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1. 별표 4 제1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4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현재 운영중인 정화시설이 2023년 1월에 바뀌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없어, 기준을 맞추기위해 추가적인 시설 도입이 필요한 경우, 도입되는 신규 시설에 대해 준공 및 준공채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시설이 추가적인 시설 없이도 변경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미 허가된 시설에 추가적인 준공검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김찬영(☎044-201-70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6-02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관련법령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의 건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1회/년)이 올해 12월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5/21)까지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는 2021년 12월까지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체로 방지시설 면제건에 대한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으며,
재검토 시 방지시설 설치의 필요가 예상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만약 금일까지 면제신청한 시설 중 자가측정 면제를 받지 못한 시설의 경우 자가측정이 가능하게 후드, 덕트를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의 포집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포집시설을 설치하고 측정을 실시 하더라도 통합환경허가로 인한 재검토시 대상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금번에 설치한 포집시설은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금액도 배로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당사는 어떤 법을 따라 어떤 시기에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2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자가측정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주기에 따라서 오염물질 항목별로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각각의 방지시설 설치면제 오염물질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가 일부개정(환경부령 제859호, 2020.4.3. 공포)되어 '21.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1년부터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방지시설 설치면제 오염물질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진규(044-201-69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6-07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관련법령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폐수배출시설을 득하고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안돼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철거 없이 사업장 운영(폐업)을 안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07-14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3334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귀 사업장이 공장가동중지 상태로 폐수배출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폐수배출량이 없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전부를 폐쇄하는 것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 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향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규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김은주, 044-201-70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2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종수 변경신고 판단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수배출량 증가시 사업장 종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행령 제31조를 보면 상기와 같이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을 하기와 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사업장의 배출량이 500m3/일 허가를 받은 3종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배출량이 증가하여 750 m3/일 미만의 50% 미만의 증가한 폐수를 배출 한다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배출량이 700m3/일이 넘어감으로써 2종 사업장의 범위에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것인지요? 그게 아니라면 위 조항은 사업장의 종수 범위 예를 들어 3종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200m3/일~700m3/일 미만의 배출량의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2. 위 조항의 1일 700m3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단순히 500 m3/일 배출 사업장이라면 1200 m3/일 이상 배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700m3/일 이상 배출하는의 2종 사업장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인지요?

2021-07-29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135145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수배출량 증가로 인한 변경허가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 (답변1)「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은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당초 인허가 당시 폐수배출량이 500㎥/일에서 50%(750㎥/일) 이상 증가 한 것이 아닐 경우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나,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2) 당초 인허가 당시 폐수배출량이 500㎥/일에서 70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임희조, 044-201-70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18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위탁폐수 폐기물 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폐시약(희석액 등) 및 시험기구 세척수 등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폐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득하여, 시험기구 세척수는 당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폐시약은 폐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현재 위탁처리중인 폐수를 폐기물인 폐유기용제(액상) 또는 연구 · 검사용폐시약(액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현재 위탁처리 중인 폐수는 폐기물의 폐유기용제 및 연구 · 검사용 폐시약과 성상이 동일합니다.

2.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외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도 진행해야 하나요?
예) 위탁폐수 처리업체를 폐기물 처리업체로 수정 등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5 15:21:5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107-01863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위탁폐수를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로 판단됩니다.

○ 폐시약의 성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수질관리과 송채영 주무관(044-201-70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관련법령

■ 소음·진동 분야

Q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2019.05.25 09:43:57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최초교육이 1년이내인지,3년이내인지?

A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선임)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환경기술인교육 관계법규 요약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 · 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 · 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 ·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업무의 위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교육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교육결과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 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자료제출 협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교육경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